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
제출연월일 : 2020. 11. 13.
제 출 자 : 서구청장

1. 개정이유

○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이 일부 개정(2020. 1. 7.) 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○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기금 운용지침 개정(2020. 1. 14.)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○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

2. 주요내용

○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확대(안 제4조)

○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규모(7인 이내 → 9명 이내)와 민간전문가(재정, 방재) 참여비율(3분의 1이상 → 2분의 1이상) 확대(안 제10조)

○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사항을 추가(안 제11조)

3. 개정 조례(안) : 붙임

4.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없음

다. 기타사항

(1) 입 법 예 고

(가) 예고기간 : 2020. 10. 12. ~ 11. 2.

(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(2) 규 제 심 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

(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(4) 성별영향평가 : 자체개선안 반영

(5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(6) 조례·규칙 심의 결과 : 원안의결

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(이하 ”법“이라 한다) 제67조”를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67조”로, “재난관리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” 을 “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” 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금”을 “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법 시행령 제75조제2항”을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75조제2항”으로, “구금고”를 “대구광역시 서구 금고(이하 “지정금고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4조(기금의 용도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영 제7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별표와 같다.

제5조제2항 중 “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”을 “「대구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”을

“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제4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”을 “대구광역시 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8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구의회”를 “대구광역시 서구의회”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의무예치액의 예치.관리)”를 “(의무예치액의 예치·관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”을 “「지방회계법」제38조제1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“국가재정법시행령 제46조 제4항 및 은행법 제2조제2항”을 “「국가재정법 시행령」제46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심의위원회”를 “심의위원회(이하 ”심의위원회“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7인”을 “9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3분”을 “2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“하여야 한다”를 “하고,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”로 한다.

제11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호(종전의 제3호)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심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2.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사항

제12조제4항 중 “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”를 “「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“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”를 “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(제4조 관련)

1.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

가. 재난의 예방·대비를 위한 교육·훈련 및 홍보

나. 재난 예방·대비·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·연구사업

다. 재난 예방·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·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·구입

라. 정밀안전진단(또는 점검) 및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에 따른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·보강, 철거

마.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, 안전시설의 설치 및 안전 요원 인건비

바. 재난취약시설, 재난현장,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·자문에 따른 장비구입·수당 및 경비

사.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·보강

아.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의2제1항에 의거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 · 운영

자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난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

차. 인명구조 및 응급처지 등 긴급구조 능력 확충사업(장비구입 포함)

카.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

타.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

파.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

하.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

2. 대구광역시 서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

가.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 하천재해위험지구, 내수재해위험지구, 토사재해위험지구, 사면재해위험지구, 바람재해위험지구, 기타 재해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시설

나.「산림보호법」에 의한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계획 상 산사태 취약지역에 위치한 시설

다.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붕괴위험 지역에 위치한 시설

라. 기타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

마.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

3. 그 밖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신・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용・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---------- -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---------- ----------.
제2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1. ~ 3. (생 략)	제2조(기금의 조성)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-----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3조(기금의 운용・관리) 기금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구금고에 예치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하는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 가능하도록 별도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운영・관리하여야 한다.	제3조(기금의 운용・관리) ---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75조제2항---------- 대구광역시 서구 금고(이하 “지정금고”라 한다)---------- ----------.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 이라 한다.) 제74조 및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	제4조(기금의 용도) 영 제7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별표와 같다.

1.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2. 인명구조에 필요한 안전장비의 구입 3.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.홍보 4. 긴급한 재난예방 및 조치를 위한 자재 구입 및 장비 임차 5. 재난예·경보시설(자동우량경보시설, 자동음성통보시스템, 재난감시 CCTV, 지진가속도 계측시설, 급경사지 계측시설 등) 설치 및 보수·보강 6.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7.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	
제5조(기금의 회계관리) ① (생략) ②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.	제5조(기금의 회계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----- 「대구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----------.
제6조(회계공무원) ① (생 략)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	제6조(회계공무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-----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,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 하여야 한다.	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제2항----------.
제7조(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) ①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	제7조(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) ①대구광역시 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제1항----------.
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	②----------대구광역시 서구의회----------.
제8조(의무예치액의 예치.관리) 의무예치액은 지정금고(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)에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금융기관이라 함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6조 제4항 및 은행법 제2조제2항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.	제8조(의무예치액의 예치·관리)----------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제1항----------. ----------「국가재정법 시행령」 제46조제4항----------.
제10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	제10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

및 운영) (생 략)	및 운영) (현행과 같음)
①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둔다.	①----------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----------.
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②---------- 9명 ----------.
③위원장은 부구청장, 부위원장은 도시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실장, 건설안전과장 및 기금운영과 재난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관계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전체위원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	③----------2분----------하고,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심의위원회의 기능)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	제11조(심의위원회의 기능) 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2.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사항
2. (생 략)	3. (현행 제2호와 같음)
3. 기금의 운용·관리에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	4. ----------심의에 부치는 ---

제12조(심의위원회의 회의) ① ~ ③ (생 략) ④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⑤구청장은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록(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심의내용)과 의결서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서면심의로 대체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	------ 제12조(심의위원회의 회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----------「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----------. ⑤------ 심의위원회----------. ----------.

관 계 법 령

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68조 (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)

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

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·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8조2 (재난 예보·경보체계 구축·운영 등)

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

제74조 (재난관리기금의 용도)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. -- 중략 --

2.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. -- 중략 --

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

제40조 (대피명령) --중략--

제41조 (위험구역의 설정) --중략--

제42조 (강제대피조치) --중략--

제55조 (방재시설) 법 제64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

1. 「소하천정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·호안·보 및 수문
2. 「하천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·하구둑·제방·호안·수제·보·갑문·수문·수로터널·운하 및 관측시설
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
4.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하수종말처리시설
5.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, 양수장,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, 배수장, 취입보(取入洑), 용수로, 배수로, 유지, 방조제 및 제방
6. 「사방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
7. 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댐
8. 「도로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·제설시설, 토사유출·낙석 방지 시설, 공동구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·교량·지하도 및 육교
9.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·경보 시설
10. 「항만법」 제2조제5호가목2)에 따른 방파제·방사제·파제제 및 호안
11. 「어촌·어항법」 제2조제5호가목1)에 따른 방파제·방사제·파제제
12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